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2. . . (제 회)	

수산물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
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조승환 (해양수산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2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수산물안전과를 2023년 2월 28일자로 폐지하면서 수산물안전과에서 수행하던 유통이력 대상 수입수산물의 지정·고시 등 업무를 해양수산부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 및 「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」이 각각 개정(대통령령 제33088호, 2022. 12. 20, 공포·시행, 해양수산부령 제574호, 2022. 12. 20, 공포·시행)됨에 따라 개정 취지에 맞추어 이 법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권한을 장관 권한으로 이전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권한 중 유통이력 수입수산물의 지정·고시의 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으로 이전함으로써,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업무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합의예정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예정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8조제1항제5호 중 “유통이력수입수산물의 지정·고시 및 수입유통이력 신고의 수리”를 “수입유통이력 신고의 수리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3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8조(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)	제28조(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)
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.	①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5.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<u>유통이력수입수산물의 지정·고시 및 수입유통이력 신고의 수리</u>	5. ----- 따른 <u>수입유통이력 신고의 수리</u>
6. ~ 11. (생 략)	6. ~ 11. (현행과 같음)
② ~ ⑩ (생 략)	② ~ ⑩ (현행과 같음)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해양수산부 수산물안전관리과	
연 락 처	(044) 200 - 5682